



October 29,, 2009

동 간행물은 삼일회계법인의
세무자문그룹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세무뉴스레터로
국내세법 개정 및 입안 과
조세행정제도, 정책 및 법규
관련 최신 동향과 선별된 최신
예규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평적성실납세제도 시범 실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
- 2010년 국세세입 예산안
- 2008년 세무조사 건수 전년대비 23% 감소
- 최신예규 판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 실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란 적절한 세무 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내부세무통제 모니터링 및 법인의 현재, 미래의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법인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음. 국세청은 법인의 납세 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음.

신청 요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협약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에 한함. (단, 2009.10월 ~ 2010.12월의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1천억 ~ 5천억원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할 예정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의 3개월 전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세무신고서 사본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한 법인은 협약서 체결 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신청서 및 부속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됨.

국세청은 서면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통보함. 국세청은 체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범실시기간 중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임. 다만, 협약체결 후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협약체결 세목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함. 법인이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 업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되어야 함.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심사, 승인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함. 다만, 협약체결 승인요건 심사시 기존의 협약이행내용, 경영 환경, 세무신고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국세청 또는 법인 모두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음.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음. 우선,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함.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함.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음.

또한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

지방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10년 국세세입 예산안

2010년 국세세입 예산안은 2009년 전망(164.6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한 171.1조원으로 전망됨. 2009년 (-) 경제성장과 감세효과 (△5.5조원 : '08년 △13.2조원, '09년 +7.7조원)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3.9%(6.5조원) 증가 예상됨.

세목별 세수분석에 따르면 법인세는 35.4조원 (09년 전망 36.1조원 대비 △0.7조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2010년 경상성장을 상승(6.6%)과 수입액 증가(16.0%) 등으로 인해 48.7조원으로 증가 전망 (09년 전망 46.3조원 대비 2.4조원 증가).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5%(△2.43조원) 차감시 46.2조원).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라 증가(+0.8조원) 양도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가(+1.6조원) 예상됨.

한편 2009년 국세수입 전망은 2009년 예산(164.0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한 164.6조원 발생 예상. 법인세는 2008년 법인실적이 저망보다 양호하고 세법상 외화평가손실 불인정으로 36.1조원으로 예상됨 (2009년 예산 대비 3.9조원 증가).

2008년 세무조사 건수 전년대비 23% 감소, 최근 5년간 최저 기록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는 전년(2007년) 대비 23% 감소한 수준인 14,838건으로써 최근 5년간 최저 기록임.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에 26,526건, 2005년 25,944건, 2006년 22,441건, 2007년 19,302건임.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 실시하여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19% 감소),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23% 감소),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22% 감소)을 실시하였음.

법인조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축소됨. 중소기업 조사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연간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조사는 15.9% 감소하였음.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현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 수행할 예정임. 정기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행하되, 간편조사·사무실조사는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함.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과제인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최신 예규/판례

외화예금의 원화 인출 시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의 인식 및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외화예금 입금 시는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865, 2009.7.29)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에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875, 2009.7.31.)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한 중소기업의 본사 등 지방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시설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공장을 철거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850, 2009.7.22.)

소유권이전을 대금회수시점까지 유보시키는 상품의 공급시기

판매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판매한 의류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대금회수시점까지 유보시키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류 등이 대리점에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1273, 2009.9.9)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화자산 대여 시 인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율 계산하는 것임. (법인-931, 2009.8.27.)

동 뉴스레터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평소 교류가 있는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 팀이나 아래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영	709-0557	jylee@samil.com
오일환	709-0897	ihoh@samil.com
이동건	709-0561	dklee@samil.com
이정민	709-0788	jmlee@samil.com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강신중	709-0578	sjkang@samil.com
전한준	3781-3489	hjcho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Samil Academy Programs

2009년 11월의 교육프로그램

재무제표분석입문 2009년 11월 3일 (화) ~ 2009년 11월 5일 (목), 3일간 총 17시간

미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기업부실징후 분석기법, 계정과목에서 전체 재무제표까지 체계적인 분석기법

원가 및 관리회계입문 2009년 11월 3일 (화) ~ 2009년 11월 5일 (목), 3일간 총 21시간

관리회계의 기초 및 관리회계정보의 활용방법, 원가 및 관리회계에 대한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설명

관리자를 위한 재무능력향상과정 2009년 11월 3일 (화) ~ 2009년 11월 6일 (금), 4일간 총 28시간

경영활동과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해설 및 분석, 감사보고서 읽는법, 원가 정보활용 과 재무비율분석

법인세세무조정실무 2009년 11월 9일 (월) ~ 2009년 11월 13일 (금), 11월 16일~20일, 5일간 총 31시간

세무조정원리, 손금, 익금,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부채평가, 충당금, 과세표준, 기타 조정계산서

사업타당성분석실무 2009년 11월 10일 (화) ~ 2009년 11월 12일 (목), 3일간 총 21시간

사업타당성 분석방법,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투자안의 경제성 및 자본비용 분석,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 사례연구, 사업성분석 종합사례연구

신입사원경리실무 2009년 11월 16일 (월) ~ 2009년 11월 20일 (금), 5일간 총 35시간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실무, 원가·관리회계 및 세무회계에 대한 기본개념

기업회계실무 2009년 11월 10일 (화) ~ 2009년 11월 13일 (금), 4일간 총 28시간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의 계정과목별 해설, 해석적용 및 질의회신 사례 해설

소비성 경비지출증빙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2009년 11월 11일 (수), 1일간 총 7시간

판례와 해석상 접대비로 본 주요 사례, 50만원 이상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동시교부시 발생문제 해결방안 등

연말정산실무 2009년 11월 13일 (화), 20일 (금), 23일 (월), 27일 (금), 1일간 총 7시간

근로소득의 범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절세 측면에서의 연말정산 실무요령, 관련 법령의 국제청 유권해석 및 실무적용 사례

부동산관련 세무해설 2009년 11월 17일 (화) 1일간 총 7시간

부동산관련 세법 체계,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절세전략

기업가치평가업무 2009년 11월 25일 (수) ~ 2009년 11월 27일 (금), 3일간 총 21시간

기업가치평가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 및 사례연구, 주요 업종 Valuation Case Study 및 기업가치평가 프로그램 실습

삼일 IFRS School 2009년 11월 25일 (수) ~ 2009년 11월 27일 (금), 3일간 총 18시간

국제회계기준(IFRS)과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주요 주제별 국제회계기준(IFRS) 소개 및 국제회계기준(IFRS) 실무사례

위의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무, 그리고 사례 연구 등 실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과정은 제외) 교육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 02-3781-3429로 하시기 바랍니다.